

신구 대조표 - 뱅샬머니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시행 2021. 07. 31]</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 [시행 2021. 09. 10]</p>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 함으로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p>	<p>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p>	<p>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와 사용자 통지 모두 진행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p>
<p>제22조 (뱅샬머니의 이용) ① (생략)</p>	<p>제22조 (뱅샬머니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② 항 신설></u></p>	<p><u>②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조건에 따라 뱅샬머니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이하 본 장에서 무상으로 지급된 뱅샬머니를 지칭할 때에는 ‘무상 뱅샬머니’라 함)</u></p>	<p>회원이 회사의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뱅샬머니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p>
<p>② 회원이 뱅샬머니를 이용할 경우 회원이 보유하는 뱅샬머니의 잔액은 이용금액만큼 차감됩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③ 회원은 뱅샬머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한합니다)를 본 서비스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들에 관하여 제13조에 따른 추심이체 동의가 필요합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계좌 중, 출금을 할 계좌(이하 ‘출금계좌’)와 송금을 받을 계좌(이하 ‘수취계좌’)를 선택하고 송금할 금액을 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⑤ 회사는 뱅샬머니의 충전 및 환급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출금계좌에서 송금할 금액을 인출하여 뱅샬머니를 충전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와 해당 뱅샬머니를 수취계좌로 환급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 기타 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⑥ 제4항에 따른 송금할 금액은 제25조에 따른 뱅샬머니 보유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회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뱅샬머니와 송금에 이용되는 뱅샬머니를 합산하여 보유한도를 계산합니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⑦ 회사는 거래 처리에 관하여 회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출금계좌에서 송금 금액과 함께 인출됩니다. 수수료는 웹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공지하며, 거래 지시 시점에도 별도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제24조 (뱅샬머니의 환급) ① 회원은 보유 중인 뱅샬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환급 요구는 뱅크샬러드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p>	<p>제24조 (뱅샬머니의 환급) ① 회원은 보유 중인 뱅샬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환급 요구는 뱅크샬러드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u>다만, 무상 뱅샬머니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u></p>	<p>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뱅샬머니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6조 (뱅샬머니의 유효기간) ① (생략)</p>	<p>제26조 (뱅샬머니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뱅샬머니의 소멸예정 사실을 소멸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총 3회 이상 통지합니다.</p>	<p>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뱅샬머니의 소멸예정 사실을 소멸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총 3회 이상 통지합니다. <u>다만, 무상 뱅샬머니의 경우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u></p>	<p>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뱅샬머니의 경우, 회원에게 소멸예정사실을 통지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p>
<p><u><③ 항 신설></u></p>	<p><u>③ 회사는 무상 뱅샬머니의 유효기간을 부여시점으로부터 5년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원에게 무상 뱅샬머니의 유효기간을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립니다.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이용되지 않은 무상 뱅샬머니는 소멸합니다.</u></p>	<p>회사는 무상으로 제공한 뱅샬머니에 대해 유효기간을 5년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이용하지 않은 무상 뱅샬머니는 소멸됨을 명시하였습니다.</p>

<p>③ 본 조에 따라 소멸된 뱅셀머니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 (뱅셀머니의 양도 등) 회원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외의 방법으로 뱅셀머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p>	<p>제27조 (뱅셀머니의 양도 등) 회원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외의 방법으로 뱅셀머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u>다만, 무상 뱅셀머니의 경우 회사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u></p>	